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4.

발 의 자 : 정춘생 · 허성무 · 김선민
차규근 · 이수진 · 이주희
서왕진 · 문대림 · 정일영
김동아 · 백선희 · 김준형
신장식 · 이해민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,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즉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

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1조의2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43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의4에 제9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1조의22(가사 및 육아도우미에 대한 특례)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가사 및 육아도우미 중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하여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(이하 “가사도우미”라 한다)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91조의22(가사 및 육아도우미에 대한 특례)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가사 및 육아도우미 중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하여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(이하 “가사도우미”라 한다)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본다.